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7
------------	----

제안연월일 : 2006년 9월 4일
제 안 자 : 이 종 호 위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7935호, 2006. 4.28. 공포)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실정에 맞는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충청북도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120일 이내로 규정하고,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회기는 50일 이내로 하며,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함.(안 제3조)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 함.(안 제4조)
- 연간 회의 총일수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 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의 심의안건과 기타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함.(안 부칙 제2항)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계법령 발췌 : 별첨

- 지방자치법 제38조 · 제39조 ·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 · 제39조 ·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회의일수는 50일 이내로 하며,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일) 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 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회의운영 등)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승인을 하고,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③임시회에서는 의회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도민의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38조 (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8.31]

제39조 (임시회) ① 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1994.3.16, 2006.4.28>

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③ 임시회의 소집은 시·도에 있어서는 집회일 7일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 삭제 <2005.1.27>

③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4.28>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개정 2000.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7.1>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

③법 및 이 영이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31]